

화순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6.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6. 25

다. 상 정 일 자 : 2004. 6. 25.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 : 보건소장 서 대 식

나. 제안이유

- 국무총리주재 호국보훈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 정책추진 기획단에서 노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에 따라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각종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수수료 일부를 감면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안 영 순)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외 5종의 보훈대상자가 질병으로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 및 수수료 일부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은 법규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첨부 : 화순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화순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수수료"를 "진료비 및 수수료"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진료비 및 사용료·수수료 감면대상	감 면 비 율 (%)				비고
	치석제거	복합 레진	주간보호 시설입소료	수질검사 및제증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50	50	100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100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50	100	100	

(개정안)

[별표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진료비 및 사용료·수수료 감면대상	감 면 비 율 (%)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복합레진		주간보호 시 설 입소료	제증명	수질 검사
		치석 제거	복합 레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100	50	50	100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100	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100	100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100	100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100	50	50	100	100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100	50	50	100	100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100	50	50	100	1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 의증 2세 환자	100	50	50	100	100	
참전 유공자	100	50	50	100	100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100	50	50	100	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0	50	50	100	100	1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수수료 감면기준(제6조 관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제6조관련)						
사용료및수수료 감면대상	감면비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감면비율(%)					
	치석 제거	복합 레진	주간보호 시설 입소료	수질검 사 및 제증명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치과부분 치석 제거	복합 레진	주간 보호 시설 입소료	제증 명	수질 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권자	50	50	100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 급권자	100	50	50	100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100	법정전염병 예방 에 필요한 경우					100	100
수사기관에서 수사 상 필요한 경우				100	수사기관에서 수 사상 필요한 경우					100	100
민방위 비상급수원 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100	민방위 비상급 수원으로 지정된 호수 수질검사					100	100
(신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100	50	50	100	100	
(신설)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100	50	50	100	100	
(신설)					5.18민주유공자 와 그 유가족	100	50	50	100	100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및고엽제후 유의증2세환자	100	50	50	100	100	
(신설)					참전유공자	100	50	50	100	100	
(신설)					20년이상장기 복무제대군인	100	50	50	100	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50	50	100	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50	100	100	100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수수료 감면)①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③수수료 감면은 별표2와 같다.</p> <p>[별표2] 수수료 감면기준(제6조관련)</p>	<p>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진 료비 및 수수료-----</p> <p>②-----진료비 및 수 수수료----- ----- --</p> <p>③진료비 및 수수료 -----</p> <p>[별표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p>